

「Industrial AX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울산대학교 Industrial AX대학원(이하 “대학원” 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대학원의 학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입 학

제3조(입학전형) 입학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의한다.

1. 서류심사에서는 학부과정 성적과 경력 기타 업적을 평가한다.
2. 면접시험은 학습역량, 학습의지, 대인관계 능력 등을 참고한다.
3. 입학전형에서 각 항목별 배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합격자 결정) 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여부를 사정하고 교학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자를 발표한다.

제5조(입학등록) 합격자로 확정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다.

제 3 장 등록, 휴학, 제적, 재입학

제6조(등록) ① 학생은 「특수대학원 학칙」 제14조에 따른 수업연한 기간동안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수업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3학점 신청까지는 반액 등록, 4학점 이상은 전액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료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연구등록시에 정규 등록금의 5분의 1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복학생의 등록) 정상등록을 마친 후 휴학한 자로서 다음의 경우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단, 장학금을 지원받아 등록한 경우,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일반휴학한 경우. 단, 4주가 경과한 후 일반 휴학한 경우는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군입대휴학으로 인하여 당해학기를 이수치 못한 경우.
3. 당해학기 개시 후 12주 이내에 중병 등으로 4주 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휴학하게 된 경우.

제8조(휴학)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휴학원에 사유서, 병역징집영장,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학 행정실에 제출,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9조(제적) 제적과 관련된 사항은 「특수대학원 학칙」 제25조에 따른다.

제10조(재입학) ①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석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을 해당학기 입학지원서 접수기간중에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재입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처음 입학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 4 장 교과목 운영

제11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서를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과목의 변경, 취소는 개강 후 3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제12조(이수학점) ① 논문 학위과정자가 수업연한 중 취득하여야 할 최소 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② 무논문 학위과정자가 수업연한 중 취득하여야 할 최소학점은 30학점이다.

제13조(교과목 개설) 전공 주임교수는 제12조의 영역별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교과목을 균형 있게 개설하여야 한다.

제14조(교과목 담당 교수) 교과목 담당 교수는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과목을 담당토록 한다.

제15조(담당 교과목 수) 1인의 교원이 담당할 수 있는 전공 교과목 수는 학기당 2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논문 연구는 예외로 한다.

제16조(강의계획서) 교과목 담당 교수는 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개강 1주일 전까지 본 대학원의 교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수강인원) 과제 연구를 제외한 교과목당 수강인원은 최소 5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과목당 학생 수가 5명 미만일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제 5 장 학위논문

제18조(논문 지도교수) ① 학생의 논문 지도교수는 3학기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전공 주임교수의 제청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②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1년에 5명 이내의 학생만을 지도하여야 한다.

③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 지도학생이 대필 등 부정행위로 학위를 취득하지 않도록 논문 지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 제출 1학기 전까지 연구계획서와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본 대학원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학위논문 제출)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제출 1학기 전에 논문계획서와 지도교수의 논문제출승인서를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심사용 논문초고 3부를 논문심사학기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통과후 15일 이내에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은 최종논문 6부와 논문을 수록한 컴퓨터 파일을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논문제출자는 전공교수 및 관계전공분야 연구자들이 모인 공개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④ 논문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ndustrial AX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 6장 편입학

제21조(편입학) 「특수대학원 학칙」 제11조(편입학)에 의거 대학원 학위과정의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편입학 전형 지원 자격

가. 2학기 편입학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나. 3학기 편입학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가. 편입학한 사람은 「특수대학원 학칙」에 규정한 수업연한에서 전적 대학원 이수 학기를 제외한 학기를 이수하되, 대학원에서 최소한 두 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고, 소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편입학한 학생의 본교 재학 연한은 4년으로 한다.

3. 편입학한 학생의 과목 및 해당 성적 인정은 2학기 편입자는 8학점까지 3학기 편입자는 16학점까지 범위 안에서 전공 주임교수는 대학원의 전공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전적 대학원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고려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